



	Chap2. 거절이유 09-1. 결합발명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후10641 등록무효(특) (라) 파기환송
제목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방법 및 여러 선행 기술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기 위한 요건	
판결이유	<p>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 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 기술의 차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 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2후10524 판결 등 참조).</p> <p>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여러 선행 기술 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 기술 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 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후3326 판결 등 참조).</p>	

## (1) 본 판례의 의의 및 취지

-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방법에 관한 대법원 확립 법리를 재확인한 판례
- 특히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함
  - 진보성 판단은 선행기술-차이점-통상의 기술자-출원 당시 기술수준의 단계적 판단을 거쳐야 함
  -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한 사후적 판단은 허용되지 않음
  - 복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발명은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기준으로 진보성을 판단해야 함
  - 여러 선행기술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결합의 암시·동기 또는 쉽게 결합 가능하다는 객관적 근거가 필요함
- 특허법원이 차이점을 개별적으로 분해·형식적으로 판단하여 진보성을 부정한 것을 법리오해로 파기환송
- 시험에서 "진보성 판단 구조 + 선행발명 결합 판단"의 판례로 활용 가능성 有

## (2) 사안개요

- 사건 유형



- 특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및 그 심결취소소송
- 당사자
  -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OOO
  - 피고(상고인): △△△ 아베
- 대상 특허발명
  - 인장 장치 및 부하 제한 장치를 구비한 벨트 위축기에 관한 발명
- 심판 및 소송 경과
  -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 청구(진보성 부정 주장)
  - 특허심판원: 진보성 인정 → 무효심판 청구 기각
  - 원고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 제기
  - 특허법원: 진보성 부정 → 심결 취소
  - 대법원: 원심판결 파기환송
- 핵심 쟁점
  -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5에 선행발명 9, 10 등을 결합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

### (3) 법리

#### ① 쟁점이 된 법적 쟁점의 특정

- 진보성 부정 여부 판단 시 고려 요소 및 판단 순서
- 사후적 고찰의 허용 여부
- 복수 구성요소 발명의 진보성 판단 대상
- 복수 선행기술 결합에 의한 진보성 부정 요건

#### ② 쟁점 관련 사실관계

- 이 사건 특허발명
  - 인장 장치, 잠금장치, 부하 제한 장치 등을 구비
  - 종래 벨트 위축기 대비 구조의 단순화 및 소형화를 기술적 과제로 함
- 선행발명 5
  - 가역적 벨트 텐셔너와 파이로테크닉 텐셔너를 함께 사용
  - 부하 제한 장치 작동 시 간섭 문제 및 비용 문제 해결이 기술적 과제
-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5의 차이점 (원문 그대로 열거)
  1. 인장 장치의 배치 구성 (차이점 1)
  2. 부하 제한 장치 결합 구조 (차이점 2)
  3. 텁니의 배치 위치 (차이점 3)
  4. 외측부(5b) 존재 여부 (차이점 4)
  5. 프레임에 고정되는 별도 하우징 존재 여부 (차이점 5)

#### ③ 적용된 판단기준

- 진보성 판단의 일반 법리
  -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 출원 당시 기술수준에 비추어 차이를 극복하여 쉽게 발명 가능한지 여부
- 사후적 판단 배제 원칙
  -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판단해서는 안 됨
- 복수 구성요소 발명의 판단 원칙
  - 구성요소를 분해하여 개별 공지 여부만 판단해서는 안 됨
  - 특유의 과제 해결 원리에 기초한 전체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를 함께 고려
- 선행기술 결합 판단 기준
  - 선행기술 문헌에 결합의 암시·동기가 존재하는지
  - 출원 당시 기술수준, 기술상식, 기본 과제, 발전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결합 가능할지

#### (4) 특허법원(원심법원) 판단

- 선행발명 5에 선행발명 9, 10 등을 결합하면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
- 이에 따라
  -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7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됨
- 특허심판원의 등록무효심판 기각 심결을 취소함

#### (5) 대법원 판단

- 차이점 1
  - 선행발명 5는 복수 인장 장치 병용을 전제로 하는 발명
  - 파이로테크닉 텐셔너 제거는 선행발명 5의 기술적 과제·의의를 무시한 것
  - 선행발명 10 역시 부정적 교시 존재
- 차이점 3
  - 선행발명 9의 폴-래칫 톱니는 기능적으로 대응되지 않음
  - 구조 및 기능이 달라 결합 동기 인정 어려움
  - 결합 위해서는 상당한 구조 변경 필요
- 차이점 4
  - 외측부(5b)는 안정성 및 이탈 방지 효과를 가짐
  - 선행발명 5에는 대응 구성 없음
  - 효과 차이 고려 시 쉽게 극복 불가
- 차이점 5
  - 이 사건 발명의 하우징은 보호·밀봉 기능을 수행
  - 선행발명 5의 기어 하우징은 단순 기어박스에 불과
  - 기능 및 효과가 본질적으로 상이
- 종합 판단
  -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음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되지 않음
  - 종속항인 제3항~제7항도 진보성 부정 불가



#### (6) 결론

- 대법원은
  - 원심판결을 파기
  -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됨**

#### (7) 한줄 키워드 요약

- “진보성은 사후적 판단을 배제하고, 청구항 전체의 기술사상과 효과를 기준으로 선행기술 결합의 암시·동기 및 결합 곤란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8) 추가 정리 포인트

- 선행발명의 기술적 과제 자체가 다르면 결합 부정 논거로 활용 가능
- 종속항은 독립항 진보성 인정 시 자동 인정 논리 명확히 기재